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의 연장과 변경된 법률명 등을 반영하고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범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환경보전기금 재원 법률명 등 변경(안 제3조제1항)
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 보전법」
 - 생태계보전협력금 → 생태계보전부담금
- 환경보전기금 사용 등 변경(안 제4조)
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
 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
 -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

○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
- 2021. 12. 31. → 2026. 12. 31.(5년 연장)

5.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환경보전기금 재원 중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 보전법」으로 법률 명칭 변경(2018. 1. 1. 시행) 사항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2022. 1. 1. 시행예정)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.
- 안 제4조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(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), 환경개선부담금(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), 배출부과금(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)의 처리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 사용범위를 구체화하였음.
- 안 제10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. 12. 31.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충북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10. 1.~'21. 10. 2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사용범위를 재원의 업무처리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